

<의안번호 제2006-4호>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3. 8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상정일자 : 2006. 3. 17

2. 개정이유

- 19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환원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, 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보건지소 신설 : 남하면 보건지소
- 나. 명칭 및 주소 변경
 - 가북면 내촌보건진료소 ⇒ 용암 보건진료소
 - 가북면 몽석리 197-3 ⇒ 가북면 용암리 1185-1
 - 고향보건진료소
 - 마리면 고향리 1130-5 ⇒ 마리면 고향리 1113
 - 율리보건진료소
 - 마리면 율리 176-1 ⇒ 마리면 율리 161-5
- 다. 별표 개정 사항 ⇒ 별표 1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'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남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된 바람직하고 신속한 조치의 결과로서 환원하는 사항과 보건진료소 3곳(내촌, 고학, 울리)의 이전신축에 따라 「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」 제8조(설치)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('06. 1. 4~1. 24)하고 있었으며, 다른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지만
- 남하면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향후 근무인원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원없이 현재의 보건소 정·현원(73명)으로 자체조정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